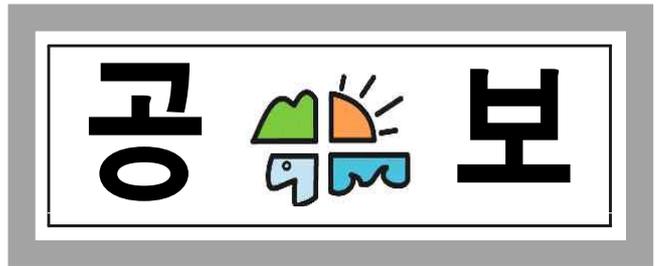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77호 2016년 2월 19일(금)

공 고

-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 부담금 공고 2
- 2016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재개 공고 3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4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1호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 공고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구경별부담금을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속 초 시 장

1. 2016년 속초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금액

-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809,000원/m³
 - 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886,000원/m³
 - 나.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구경별부담금 : 90,000원(D15) ~ 8,000,000원(D100)
- ※ 세부 산출기준 붙임참조

2. 과년도(2015년) 생산자물가상승률 : -4.013%

속초시 공고 제2016-2호

2016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재개 공고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급수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시중지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2016년 해빙기 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개하고자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속 초 시 장

1. 재개일자 : 2016. 3. 3. ~ 동절기 별도 공고시 까지
2. 내 용 :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시공
3. 사 유 : 해빙기 도래에 따른 급수공사 재개
4. 문 의 처 : 속초시상수도사업소(☎ 033-639-2668)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17.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02. 19. ~ 03. 04.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6. 02. 16.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오세강
	주소 (대상상주소)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426번지
	건축물 현황	1층 목조 주택 26.97㎡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